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 상 임 위 원 회

### 결 정

사 건 19진정0111500 노량진 수산시장 관련 긴급구제 신청  
진 정 인 000  
피진정인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

### 주 문

1. 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에게,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발생한 구 시장 상인들과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직원들 간의 충돌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향후 폭력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 이 유

#### I. 긴급구제 신청에 대한 검토

## 1. 긴급구제 신청요지

진정인은 아래의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긴급구제 조치를 요청한다.

가. 피진정인은 2019. 2. 8. 08:30경 구 시장 구역으로 진입하는 4개의 통로를 시멘트로 봉쇄하였다. 상인들의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영업이 방해되고 있으며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나. 피진정인은 폭력 전문가들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공실관리’라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구 시장 상인들에게 폭언하고, 구 시장 상인들을 협박, 폭행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2018. 11. 5. 구 시장 구역 전체에 단전과 단수조치를 하여 영업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 2. 피진정인의 주장

구 시장 상인들은 2019. 2. 8. 피진정기관이 설립한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이하 ‘본건 회사’라 한다)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원 4명이 입원하였다. 피진정기관과 본건 회사는 폭력을 행사한 상인들을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고용한 일용직들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으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교육하고, 직원들에게도 노점상연합회와 충돌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시할 계획이다. 구 시장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와 차량진입로 봉쇄에 대해서는, 구 시장 상인들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것에 대응한 정당한 관리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본건 회사는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구 시장에서 신 시장으로 점포를 이전해야 함에도 일부 시장 상인(이하 ‘구 시장 상인’이라 한다)이 계속 점포를 점유·사용하자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하였고, 대법원은 2018. 8. 17. “구 시장 상인들은 동의 없이 점유하고 있는 각 점포를 소유자인 수협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본건 회사는 구 시장 상인들의 점포들에 대하여 4차례 명도집행을 시도하였으나, 구 시장 상인 측의 반발에 의하여 무산되었고, 같은 해 11. 5. 명도집행 대신 구 시장 부지와 점포에 대하여 단전·단수조치를 하였다.

또한, 본건 회사는 2019. 2. 8. 오전 (구)노량진 수산시장 진입로에 시멘트 등으로 구조물을 설치하여 차량진입을 차단하였다. 이를 인지한 구 시장 상인 측은 같은 날 저녁부터 구조물 철거를 시도하여 1개의 차량진입로 구조물을 철거하였고, 이를 제지하고자 하는 본건 회사 직원들과 충돌하였다. 당시 00경찰서 경찰관 6개 중대가 출동하였음에도 양측은 물리적으로 충돌하였고, 다수의 인원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2019. 2. 8. 사건 이외에도 명도집행이나 공실관리 과정, 또는 단전·단수 조치를 둘러싼 문제로 인하여 본건 회사 직원들과 구 시장 상인들 간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으며, 우발적인 말다툼과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긴급구제 조치 권고의 요건은 조사대상의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단전·단수 조치, 차량진입로 폐쇄의 경우 피해의 주된 형태가 인신상의 피해라기보다는 영업 손해에 따른 재산권에 대한 문제이고 관련 사항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있었던 점, 폭력 행위에 대한 내용은 현재 발생 중인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는 긴급구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II. 이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 1. 의견표명 이유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상호간에 심각한 부상을 야기해 온 물리적 충돌을 고려할 때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양 당사자들 간의 불신과 갈등이 지속되면서 우발적인 폭력사건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특히 본건 회사에서 재산권 행사를 이유로 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피해가 우려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인권친화적인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당사자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벌어졌던 충돌 및 부상자 발생에 대하여 우려의 입장을 밝히며,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에게 향후 폭력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문제는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고, 폭력을 동반한 충돌 사고 및 부상자 발생 등이 우려되므로 근본적인 사

건 해결의 필요성이 있으나, 당사자 사이의 협상만으로는 해결의 어려움이 있다. 구 시장 상인들이 서울특별시의 중재를 요구하고 있고, 서울특별시는 노량진수산물시장의 개설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관내 주민들의 중요한 갈등문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역할이나 가능성이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조정이 가능하다. 피진정인은 서울특별시 등에게 중재·조정 요청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 2.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2. 21.

위 원 장    최 영 애

위    원    정 상 환

위    원    정 문 자